선박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대표전화 : 02-3498-7111~2

팩　　스 : 02-3462-7718

인 터 넷 : http://www.koem.or.kr

KOEM 해양환경공단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KOEM 해양환경공단

2018. 6.

선박

방제증서 발급 안내서

KOEM
해양환경공단

머 리 말

우리 공단은 크고 작은 해양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해양환경을 보전·관리·개선하기 위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등의 해양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의 배치·설치를 수탁·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방제증서를 발급받는 실무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지침서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안내와 방제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방제증서 실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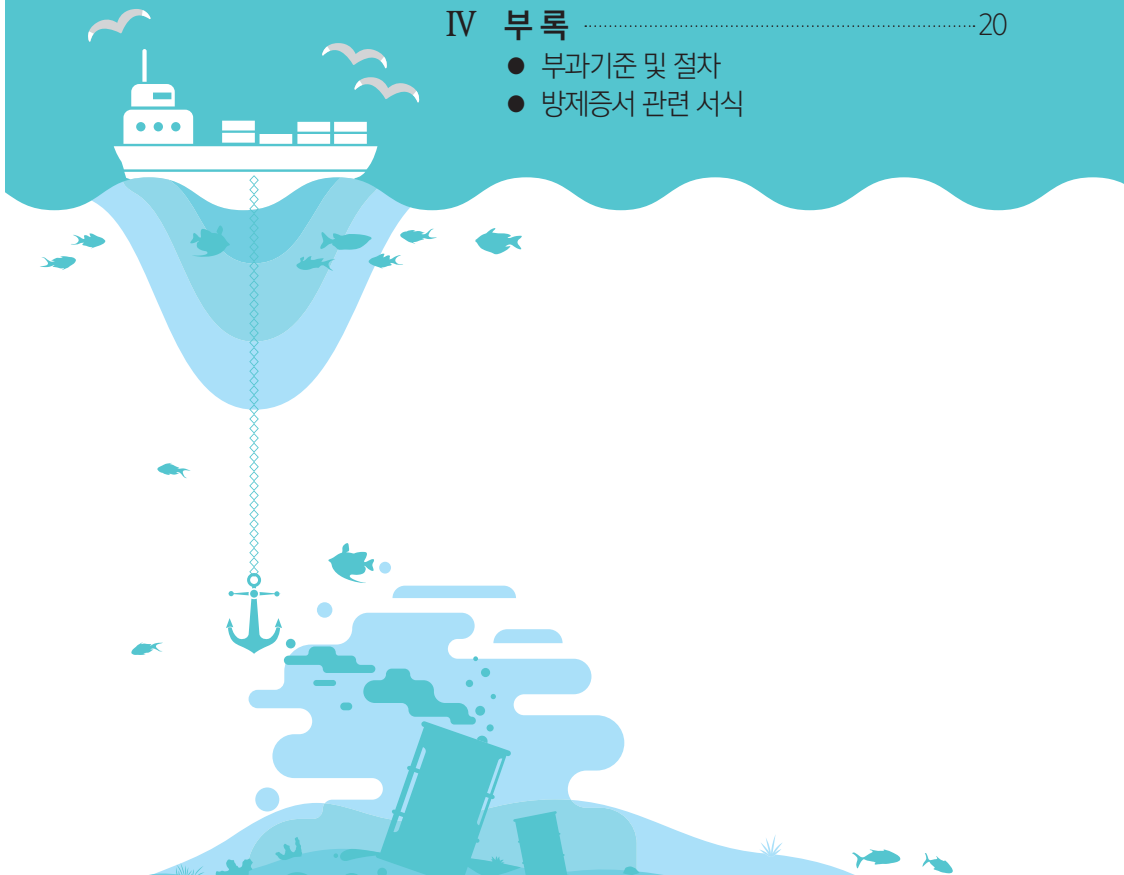
목 차

Ⅰ **방제증서 관련 주요사항** 4
- 방제증서 요약표
- 방제증서대금 부과기준
-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방제증서 발급 절차

Ⅱ **관련법령** 10
- 방제선등의 배치
- 방제분담금
- 수수료
- 자재 및 약제의 비치

Ⅲ **질의 응답** 17

Ⅳ **부 록** 20
- 부과기준 및 절차
- 방제증서 관련 서식



I 방제증서 관련 주요사항

- 방제증서 요약표
- 방제증서대금 부과기준
-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방제증서 발급 절차

방제증서 요약표

● **증서종류 :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증서**

증서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증서
해당 해역	인천구역, 부산구역, 울산구역, 포항구역, 여수구역,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제주항	전국
선박	● 500톤 이상 유조선 ●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 100톤 이상 유조선 ● 1만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화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 기름 ·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 · 약제 비치기준 등)
납부금	방제선등 위탁 배치 수수료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수수료
부과 기준	방제선등 위탁 배치 수수료 부과기준 (6쪽 참고)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수수료 부과기준 (6쪽 참고)
	*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경우 증서 발급 및 수수료 부과	

※ 방제분담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등 법령에 의거 배치의무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부과기준 및 절차는 21쪽 참고

※ 방제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

방제증서대금 부과기준

● 방제분담금 및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4.77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14.32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		2.48원	
	외항선		7.45원	

●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증서 수수료 부과기준

1. 유조선

(단위: 원/입항)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10만톤 미만	10만톤 이상
금액	12,000	15,000	38,000	150,000	374,000	600,000

2. 유조선 이외의 선박

(단위: 원/입항)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3만톤 미만	3만톤 이상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금액	12,000	15,000	38,000	50,000	60,000	75,000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 선박 방제증서 발급 흐름도

① 신청/접수
· E-방제증서(인터넷) 발급 신청
· 팩스 신청(팩스번호 02-3462-7718)

↓

② 방제증서/지로고지서 발급
· 방제증서 지로 수신처로 영업일 기준 신청서 접수
익일 우편등기 발송

↓

③ 납부
· 매월 1일~15일 발행분->다음달 5일까지 납부기한
· 매월 16일~말일 발행분->다음달 20일까지 납부기한

↓

④ 정정 및 취소
·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 시
구비서류 제출(신청) 및 검토 후
정정/취소/변경부과 등

⑤ 환급
· 환급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 제출 후 환급 신청

방제증서 발급 절차

신청/접수

인터넷 자가 발급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oem.or.kr) 메뉴 “E-방제증서” 접속하여 방제증서 발급(공단 홈페이지 방제회원 가입/승인 후 접속)

팩스로 증서 신청서 제출

증서발급신청서(24쪽 참조)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 (팩스번호 : 02-3462-7718)

※ 인터넷 접속 경로



공단 홈페이지(http://www.koem.or.kr)
“메뉴 E-방제증서” 또는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증서발급신청 바로가기” 클릭

방제증서/지로고지서 발급

방제증서가 발급되면 방제증서/지로고지서를 영업일 기준 신청·접수 익일 우편(빠른등기) 발송합니다.

※ 금요일 발급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지로 발송되며 우체국 사정상 2~3일 후 도착 예정
※ 인터넷 자가 발급 건 : E-방제증서 홈페이지에서 방제증서 직접 출력 가능

납부

대금 납부

납부자는 지로용지에 표시된 금액과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합니다.

※ 전국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수납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www.giro.or.kr)으로 납부 가능
※ 공단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증서대금 납부 가능합니다.
- 분담금 계좌 : 우리은행 1005-802-726627
- 수수료 계좌 : KEB하나은행 280-890023-06204

납부기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증서발행분은 다음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증서발행분은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납부의무자가 체납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단은 방제증서를 발급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2018년 5월 1일 부과 분부터 시행)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최대 3%)

정정 및 취소

방제증서 변경사항 발생 시 구비서류 제출(신청) 및 검토 후 정정, 취소 또는 변경부과 등을 실시합니다.

※ 구비서류 : 입출항 신고자료, 적하목록 등

환급

환급은 소정의 절차(환급금 신청서, 공단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접수한 후 검토하여 환급할 사유 확인되면 환급)를 거쳐 실시합니다.

※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환급할 사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한 이후 공단으로 환급 요청
※ 구비서류 : 환급신청문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증 등

Ⅱ 관련법령

- 방제선등의 배치
- 방제분담금
- 수수료
- 자재 및 약제의 비치

방제선등의 배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 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 · 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방제선등의 배치 등)

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 · 설치(공동배치 · 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별표 8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6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를 위탁받은 공단이 방제조치 또는 배출방지조치를 하는 경우 방제의무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4조(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하는 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

1. 「해사안전법」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특정해역
2.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다음 각 목의 항만

가. 인천항 나. 평택 · 당진항 다. 대산항 라. 군산항 마. 목포항 바. 여수항 사. 광양항 아. 마산항 자. 부산항 차. 울산항 카. 포항항 타. 동해·묵호항 파. 제주항

②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 등을 공동으로 배치 · 설치한 자와 설치 · 배치를 위탁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거서류를 해당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공동배치를 한 자 : 배치한 방제선등의 목록 및 제원
2. 설치 · 배치를 위탁한 자
   가.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다. 수탁기간
   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통신방법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129조(벌칙)

제1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명령 또는 시설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129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재 ·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방제분담금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방제분담금)

① 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2(방제분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방제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방제분담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2(가산금)

법 제6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의3(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①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적하(積荷)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박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위험물반입신고서

2.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 :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각 목의 자료

나.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

다. 「관세법 시행령」 제176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입신고서

라.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

② 공단은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기한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 요구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 요구 자료의 목록
4. 제출 방법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배치의무자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부과하였거나 납부된 방제분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의 운항계획 변경 등으로 방제분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방제분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방제분담금을 조정하거나 환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 환급 시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방제분담금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제분담금의 납부통지(제3항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방제분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신청은 방제분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방제분담금의 부과금액은 3년마다 다시 산정한다.

⑦ 그 밖에 방제분담금의 부과 ·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수수료

● 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② 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재 · 약제의 비치 또는 방제 및 방제선등의 배치 ·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 · 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 · 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자재 및 약제의 비치

●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

① 항만관리청 및 선박 ·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의 방제 · 방지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를 보관시설 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3조(선박에 비치할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방지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 · 약제"라 한다)를 갖추어두어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은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선박 안에 갖추어야 하는 자재 · 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다만, 유처리제 · 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기준량의 10퍼센트 이상을 갖추어두고 나머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관시설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선박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치 · 설치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66조에 따른 자재 · 약제 등을 갖추어둔 것으로 본다.

⑤ 해역관리청 및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보관시설에 갖추어두어야 하는 자재 · 약제의 최소 비치기준에 관하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를 준용한다.

Ⅲ 질의응답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박의 의무사항이 있나요?

● 네.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방제분담금 납부, 방제선등의 배치, 자재 · 약제의 비치)

대상선박		방제분담금 납부	방제선등의 배치	자재 · 약제의 비치
유조선	100톤 이상			○
	500톤 이상	○	○	○
유조선 외의 선박 1만톤 이상		○	○	○

※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제67조, 제69조 등
*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방제선등의 배치·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시 분담금을 냈으면 방제조치비용은 안내도 되나요?

● 아니요. 방제조치 비용은 별도입니다. 오염원인자 책임에 따라 방제조치비용은 오염사고의 원인자가 부담합니다.
방제분담금은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제능력 확보·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치의무자라면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자재 · 약제 위탁 비치 증서가 있는데, 부산항 입항 시 방제선등 위탁 배치 증서가 또 필요한가요?

● 네. 필요합니다. 방제선등 배치 의무는 자재 · 약제 비치 의무보다 더 강화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자재 · 약제만을 갖추고 방제선등 배치 해역에 입항하는 대상 선박은 자재 · 약제와는 별개로 방제선등 배치 의무가 생깁니다.

케미컬 운반선은 유조선인가요?

● '유조선'은 화물창의 대부분이 산적한 기름을 운반하기 위한 구조로 된 선박을 말합니다. 다만, 방제분담금 관련, 겸용선인 케미컬 운반선(유조선 겸 액체화학품산적유송선)은 입항 시마다 선박의 산적화물 종류에 따라 유조선 여부를 판단합니다.

방제선등의 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선박입출항 금지 또는 시설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Ⅳ 부록

- 부과기준 및 절차
- 방제증서 관련 서식

부과기준 및 절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관련]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1. 대상 : 경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선박 및 기름저장시설

2. 부과기준

가. 선박

구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총톤수기준 1톤당	4.77원	매 1회 입항할 때마다
	외항선		14.32원	
유조선 외의 선박	내항선		2.48원	
	외항선		7.45원	

나. 기름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8.66원

3. 부과절차

가. 선박의 방제분담금(이하 이 표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입항할 때마다 부과하며, 배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분담금은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이 입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항하는 경우에는 1회의 입항으로 본다.

나. 선박의 소유자가 연간 10회의 입항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미리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분담금은 이를 면제한다.(2019년 1월 1일 부터 나목 폐지 시행)

다. 유조선 외의 선박이 선박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부과한다.(2019년 1월 1일 부터 다목 폐지 시행)

라. 공단은 기름저장시설의 분담금을 1년간 해상으로부터의 수령량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분기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분기 1월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배치의무자는 매분기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거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해당 기름저장시설에 유류의 저장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한다.

1) 전년도 유류 수령실적이 없는 경우 :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2)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개시하는 경우

가) 이용 개시 연도의 분담금 : 해당 기름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50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이용 개시일부터 이용 개시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나) 이용 개시 다음 연도의 분담금 : 전년도 이용기간 중 유류 수령량을 기준으로 1년간 유류를 수령하였을 경우를 계산하여 수령량을 환산한 연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보아 분담금 부과

3)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하는 경우 : 전년도 유류 수령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하되, 해당 기름저장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이용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분담금 부과

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마목 폐지 시행)

바. 「한국전력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용 기름에 대하여는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25를 부과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바목 폐지 시행)

사. 라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석유공사법」제2조에 따른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축하고 있는 기름에 대하여는 유류의 출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전년도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평균 출하량을 분담금 부과대상 물량으로 본다.

아. 분담금 납부대상 유종과 유사한 비중과 점도를 지닌 물질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양경찰청 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다.

자. 분담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

자재·약제의 비치 수수료 부과기준

1. 유조선

(단위: 원/입항)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10만톤 미만	10만톤 이상
금 액	12,000	15,000	38,000	150,000	374,000	600,000

2. 유조선 이외의 선박

(단위: 원/입항)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	500톤 이상 5천톤 미만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만톤 이상 3만톤 미만	3만톤 이상 5만톤 미만	5만톤 이상
금액	12,000	15,000	38,000	50,000	60,000	75,000

※ 100톤 이하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톤 미만 선박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

3.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30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전년도 기름입하실적의 100리터당 5.5원으로 한다.

4. 총톤수 100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단위: 원/년)

구 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5,000톤 미만	5,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10,000톤 이상
수수료	2,000,000	2,200,000	2,500,000	3,000,000

방제증서 관련 서식

증서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Oil Pollution Prevention Obligation)

<table>
<tr><td rowspan="2">신청
증서</td><td colspan="4" rowspan="2">☐ 방제선등 위탁 배치증서
☐ 자재 · 약제 위탁 비치증서</td><td colspan="4">입항지(　　), 차항지(　　)</td></tr>
<tr><td>입항예정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증서(원본)
수신처</td><td>회사명</td><td></td><td>대표자</td><td></td><td>전화</td><td></td><td>팩스</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5"></td><td>우편번호</td><td></td></tr>
<tr><td rowspan="4">선박</td><td>선박번호</td><td></td><td>호출부호</td><td></td><td>선박명</td><td colspan="3"></td></tr>
<tr><td>총톤수</td><td></td><td>선종</td><td>☐ 유조선
☐ 비유조선</td><td>선박
국적</td><td colspan="3"></td></tr>
<tr><td>화 물</td><td colspan="3">☐ 경유 또는 지속성 유류　☐ 기타유류</td><td colspan="4">석유 제품명(　　)</td></tr>
<tr><td>P&I</td><td colspan="7">☐ 가입(클럽명 :　　)　☐ 미가입</td></tr>
<tr><td colspan="2">유효예정기간</td><td colspan="7">~　　(☐ 1회용　☐ 연간용)</td></tr>
<tr><td colspan="2">납부금</td><td colspan="7">₩　　원　(☐ 외항선　☐ 내항선)</td></tr>
</table>

해양환경관리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상기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신 청 자 :　　전화 :　　팩스 :
주　　소 :　　우편번호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분담금 부과기준

○ 선박

구 분		부과 기준	부과 금액	부과 방법
유조선	내항선	선박 총톤수 기준 1톤당	4.77원	매 1회 입항시 마다
	외항선		14.32원	
유조선외의 선박	내항선		2.48원	
	외항선		7.45원	

○ 기름저장시설 : 유류 수령량 100리터마다 8.66원

※지속성 유류 : 원유, 중유, 선용연료유, 윤활유 등(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5호)